

金融保険解除에 關한 少考



洪 聖 喆

〈本協會・常任理事〉

目 次

1. 保 險
2. 保險 푸울의 本質과 形成動機
 - 가. 保險 푸울의 本質
 - 나. 保險 푸울의 形成動機
3. 金融 푸울保險
 - 가. 金融 푸울保險의 成立
 - 나. 金融 푸울保險의 寄與
 - 다. 金融 푸울保險의 問題點
 - 라. 金融 푸울保險의 解除에 따른 問題
4. 結 論

1. 序 論

8.15解放以後 貧弱하나마 健全한 民族資本에
의한 保險企業을 始作한 초창기에 우리나라 損害保險市場은 極히 制限된 對象物件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大量은 保險會社의 亂立과 技葉의 保險
감독 行政, 火災保險만이 唯一한 傳統商品
으로 一貫했던 탓으로 各社間에 치열한 競爭이
不可避하였고 이러한 過當競爭의 난국을 打開하기
위하여 10餘種에 가까운 各種 火災保險 푸울(pool)이 實施되었다.

그 以後 60年代에 들어와서도 金融 푸울保險의 實施는 勿論, 保險經營을 위한 經驗과 保險技術에 대한 知識의 缺乏, 重危險에 대한 擔保力不足, 危險分散을 위한 再保險의 메카니즘(mech-

anism)을 驅使할 수 없었기 때문에 所謂 新種保險의 開發段階에서 海上保險 푸울, 自動車保險 푸울, 保稅保險 푸울 등이 實施되어 지난 30餘年的 損害保險歷史를 회고하여 볼 때 保險 푸울制度가 우리나라 保險企業의 特殊한 經營形態로 體質化되어 왔다.

60年代以後 全般的인 經濟發展과 더불어 保險產業도 高度의 量的, 質的成長을 이루하여 오면서 保險 푸울이 여러측면에서 보험 산업發展에 寄與한 공과를 결코 看過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反面에 保險業界나 보험 감독 당국에서 論難의 對象이 되어 왔으며 特히 學界에서는 保險產業의 育成과 現代化方案이 擡頭될 때마다 自由競爭의 原理에 의한 經營體質強化와 保險의 저번擴大와 大衆化를 위한 代理店育成策의 일환으로 푸울解體論을 主張하여 왔다.

이와같이 歷史的인 現實性과 理論的, 政策的인 面의 相互對立關係에서 유지되어 온 푸울制度가 작년 6月부터 金融 푸울의 段階的 解除가 實現되었다. 그러나 그 解除方法, 범위, 時期等이 우리나라 보험 기업의 현안문제와 問題點 寄與度等을 감안할 때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點에 있어 關聯된 사람마다 그 판단이 相異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 업계에 몸담아온 한사람으로서 이에 對한 몇 가지 느낀 點을 괴력코자 한다.

論壇 2

2. 保險 푸울의 本質과 形成動機

가. 保險 푸울의 本質

文獻에 의하면 保險 푸울은 元來 保險企業 相互間에서 生成된 것이 아니고 資本主義의 形成段階에서 다른 產業部間에서 생긴 푸울制度에서 緣由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保險 푸울은 그性格이나 本質을 宏明함에 있어서 國家마다 그 나라의 經濟的, 社會的, 歷史的 背景이 각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保險 푸울이 한 多數의 保險者가 保險目的, 基本料率 및 特約條項等을 決定하고 相互協定에 의하여 各社가 引受한 全體의 保險契約을 한곳(pool)에 모아 미리 定한 配分比率에 따라 共同引受契約을 分配하는 制度라고 하며, 따라서 保險 푸울은 保險目的 條件(約款), 保險料率의 協定을前提로 하기 때문에 保險 카르텔의 一種이라고 할 수 있으나 中央機關(pool office)을 通하여 各社間에 危險共同體가 構成되고 共同管理를 하기 때문에 競爭을 排除하고 保險 카르텔보다 協定이 더욱 強力하여 保險企業의 合同(fusion)에 가까워 진다고 한다.

나. 保險 푸울의 形成動機

保險 푸울이 形成되는 動機도 本質에서와 같이 國家와 時代에 따라 여러가지 形태가 있으나 一般的인 것을 말한다면,

첫째 保險技術上으로 볼 때 重危險으로 어느한 保險會社가 單獨으로 引受하기 어려운 경우, 危險의 平準化가 必要한 경우, 保險產業 初創期에 新種商品의 販賣와 開發過程에서 새로운 部間의 開拓 또는 基盤이 缺如된 때에 危險分散을 위하여 푸울이 設定되는 것으로 例를 들면 航空保險, 지진보험, 대형선박보험, 原子力保險과 같은 特殊危險及 未知要素가 많은 危險을 共同引受하는

것이며 오늘날에도 先進各國에서 施行하고 있으며 特히 原子力保險은 危險이 巨大하고 未知의 危險內容을 內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世界各國이 푸울을 形成하고 이 푸울을 通해서만 再保險을 行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理由때문이다.

둘째 限定된 保險對象을 두고 多數의 保險會社가 相互競爭의 要素가 많을 경우 이를 排除하기 위하여 푸울이 形成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것은 제1차 世界大戰을 前後한 구라파各國과 8.15 解放以後 우리나라의 各種火災保險 푸울이 그 代表의 例이다.

3. 金融 푸울 保險

가. 金融 푸울 保險의 成立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8.15解放以後 美軍政時代에 亂立된 損害保險會社는 火災保險의 單一種目에만 集中하여 金融機關의 損保物을 中心으로 한 귀속財產, ECA원조物資等 強制附保對象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競爭의 集中現象은當然한 結果이었다. 더구나 그當時 영업을 開始한 東洋社, 新東亞社, 大韓社, 서울社等 既存四個會社는 新設會社의 認可를 強力하게 反對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每年 保險會社가 增設되어 保險供給의 超過現象이 야기되어 競爭은 더욱 치열하였다. 이러한 爭전하에 取하기로 對應策이 金融 푸울의 實施論인데 그것도 各社間에 理解關係對立으로 成立되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形태의 弊端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다가 5.16革命以後 國家再建最高會議의 保險會社에 대한 特別監查 實施와 同監查報告의 保險產業育成方案에서 金融 푸울 實施를 건의하게 되었는데 이와같이 金融 푸울 實施를 건의하게 된 背景은,

첫째 과당競爭으로 因한 保險募集秩序의 糟亂을 避免하는데 特히 保險費率原價中 直接的인

論壇 2

모집비의 上昇으로 代理店手數料以外의 리베이트(rebate) 코미션(commission)의 支給等은 勿論, 危險等級의 조작, 保險料의 감액, 外上保險의 締結, 金品提供等이 반연하였고,

둘째 未收保險料의 累積으로 그當時 火災保險業界는 金融機關代理店의 累積된 未收保險料를 回收하기 위하여 每年 決算期를 맞아하여 金融團에 清算을 要請하였으나 오히려 매년 未收金額이 증가되었을뿐 아니라 金融機關代理店의 廢棄措置로 因하여 未收保險料의 상당액이 不良債權화가 되고 말았다.

셋째 金融機關代理店의 手數料의 문란인데 그當時 代理店手數料는 감독당국의 規制에 따라 金融機關代理店은 收入保險料의 5%, 一般代理店은 10%이었으나 경쟁이 격심하여 代理店手數料以外에 別途의 리베이트까지 支給하여 30%以上까지도 支給하는가 하면 先給手數料의 事例까지 나타났다.

넷째 金融機關代理店의 解止通告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同代理店들의 各種 問題點等으로 因한 社會의 非難과 연체보험료에 대한 責任을 면하기 위하여 銀行으로부터 代理店의 解止를 通告받았고, 더욱이 이에對한 代案으로 總代理店“興產社”的 出現과 더욱이 同代理店의 횡포가 자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여건속에서 1963年 1月末 損害保險會社의 整備·統合과 金融 푸울의 實施를 確定하고 많은 시련과 진통속에 1964年 4月16日 “金融機關火災保險共同引受事務所”를 設置하고 金融 푸울業務를 開始하게 되었다.

나. 金融 푸울 保險의 寄與

전술한 바와 같이 1964年 當時 10個損害保險會社의 相互協定에 따라 金融 푸울이 成立된 以後 우리나라 保險產業發展에 寄與한 공과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既形成된 火災保險市場에 대한 募集窓口의 一元化로 푸울成立以前에 반연했던 리베이트

코미션의 支給, 代理店手數料의 과다支給等 各種 不條理나 不實契約事例가 푸울成立以後에도相當期間동안 变形된 方法으로 계속되기는 하였지만 당국의 구준한 보완조치로 70年度 以後부터는 이와같은 과當경쟁요소가 거의 排除되어 보험도집秩序가 確立되었고,

둘째 過當競爭으로 因한 出血經營을 防止함으로서 保險會社의 營業收益과 資產을 增大하여 保險企業의 基本條件인 擔保力과 公信力を 提高하였음은 勿論이고, 營業의 合理化로 數次에 걸쳐 保險料率을 引下하여 保險契約者の 利益을 도모하였다,

셋째 保險市場構造의 改善으로 保險商品은 販賣力競爭으로 因한 수요증대라는 特性때문에 金融 푸울成立以後 各社의 販賣力競爭을 새로운 市場開拓과 新種商品의 積極적인 販賣促進에 轉換함으로서 푸울成立當時 火災保險이 全體保險市場에서의 占有率이 약 70%以上 차지하던 것이 그간 特殊建物에 대한 特約付火災保險의 加入義務化措置에도 不拘하고 1980年度에는 火災保險이 全體의 12.6%를 占有함으로서 保險市場의構造의 改善에 이바지 한바 크다 하겠다.

넷째 保險企業의 社會的責務를 具現하는 役割과 保險의 技術化를 유도하는데 寄與하였다고 볼수 있는데 즉 現代保險機能은 在來의 補償과 金融機能以外에 先進外國保險에서 이미 오래 前부터 一般化된 事前豫防活動인 安全點檢, 防災技術研究 및 啓蒙·弘報活動을 遂行함으로서 損害發生確率과 損害發生크기를 事前에 減小하는 積極적인 活動과 保險產業의 技術化 유도가 우리나라 1973年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여 上記機能을 수행할수 있도록 “韓國火災保險協會”를 設立·運營도록 하였으며 同機能을 수행하는데 必要한 財源을 부가보험료의 추가부담없이 共同引受로 因한 모집費의 절감액으로 充當케 하였는데 金融 푸울保險이 50%以上 捷유함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論壇 2

다. 金融 푸울保険의 問題點

以上 金融 푸울保険이 우리나라 保險產業發展에 寄與한 反面에 一部保険業界나 政策當局, 特히 學界에서 그간 주장하여왔던 푸울經營形態에 對한一般的인 問題點을 보면,

첫째 企業의 自由競爭原理의 도입·擴大와 保險企業의 自進力 提高에逆行하고 있다는 點으로 즉 전업형태나 푸울형태의 市場構造나 政府當局의 지나친 保護政策은 元受保険會社들의 無事安逸主義에 흐르기 쉬어 新種商品의 開發, 先進國型 保險商品의 綜合化를 위한 研究와 海外進出노력, 고객에 대한 서비스競爭等을 根幹으로 각者の 經營能力에 따라伸張할 수 없으며 自由競爭으로 因한 保險料率壓力이 없다는 點이며

둘째 保險市場擴大를 위한 代理店育成에 저해要因이 있다는 點으로 즉 保險商品은 無形의 非自發的需要商品으로 保險市場擴大가 商品力보다 販賣力에 依存하는 特性이 있고, 또한 保險은 確率現象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大數의 法則이 適用될 수 있을 程度의 大量契約의 募集은 健全한 保險經營에 必要불가결한 뿐만 아니라 保險의 大衆화를 위하여는 代理店育成에 의한 保險市場擴大가 必要한데 火災保險市場의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金融物件이 푸울로 뛰어 있기 때문에 代理店育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保險者選擇權問題로 즉 보험契約者나 被保險者가 保險契約을 締結하고자 할 때는 보험자의 公信力이나 서비스面等 諸般競爭要素을勘案하여 自由意思에 의하여 保險者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푸울制度는 모집 창구의 一元化로 이러한 選擇權이 없다는 點이다.

라. 金融 푸울保険의 解除에 따른 問題

60年代以後 數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을 위한 莫大한 資金支援과 外資導入에 따른 支給保證等 果敢한 金融지원에 힘입어 1964年初

創期의 收入保險料가 불과 307百萬원이던 것이 1980年度에는 57倍인 17,912百萬원으로 실로 놀라운 成長을 이루하였고, 또한 全體火災保險料의 38.2%의 占有率을 차지하는 重要한 對象物件으로 각社마다 많은 관심의 對象이 된뿐만 아니라, 特히 主要產業施設의 高額契約에 대한 競爭이 不可避한 現實속에 政府關係當局에서는 지난 1981年 6月부터 住宅 및 一般物件을 필두로 단계적 解除方針下에 今年 6月 2段階 工場物件의 一部에 대한 解除措置가 이루워졌다.

그러나 理論的, 政策的인 面에서 金融 푸울의 절대적存在理由가 充分치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解除措置가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현안問題點과 과거의 고질적인 保險募集上弊習과 一同으로 解決하여야 할 課題等을考慮할 때 과연 적절한措置였는가? 하는點에 對하여 再考가 되어야 할 것이다, 今後 어떠한 問題點을 念頭에 두고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點에 대하여 몇 가지 私見을 말한다면,

첫째 既解除된 對象에 對한 解除方法上의 問題로 既存市場의 開放에 따른 새로운 參加率競争의 不作用을 最少화하기 위하여 金融機關과 保險會社間에 “保險業務專擔去來契約”的 締結에 의한 解除方法은 ① 새로운 변형된 푸울이 形成된結果를 招來하여 푸울解除理由인 開放經濟體制下에 競爭體質強化화는 事實上 거리감이 많고 ② 火災保險販賣組織의 必然的인 增加에 따른 經費 및 管理上의 問題點等이 대두되고 ③ 代理店手數料內에서의 不當經費競爭等 과거 保險募集上의 不條理 및 不當競爭의 再演可能性이 많으며

둘째 金融 푸울保険의 高額契約의 工場物件을 解除時 ① 既往의 他社契約을 爭取하거나 不實表示方法等으로 保險市場秩序의 紊亂은勿論 ② 1980年基準 우리나라 家計性保險의 보급율을 보면 10.2%(義務保險인 特殊建物을 除外할 경우 5.4%)로 美國의 83%, 日本의 80.2%에 比하면 극히 저조한 實情인바 保險의 大衆화를 위한 잠재적 가격보험市場의 開拓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

論壇 2

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高額契約인 企業保險 選好에 따라 家計性保險市場 開拓이 소홀하여 保險의 大衆化 및 저변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우려되며,

셋째 擔保權者의 附保權行使와 被保險者의 마찰로 保險者選擇이나 擔保條件에 反한 不必要한 危險을 附保토록 하여 被保險者의 保險料負擔을 加重케 하는 等 被保險者의 意思에 反한 附保가 이루워지고 反面에 保險者의 지나친 수익성위주로 小額契約에 대한 附保기피현상으로 擔保權者의 債權保全業務에 지장을 초래하는 結果가 우려되며,

넷째 保險의 現代的 機能과 保險企業의 社會的 責務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的 使命을 다할 수 있는 自體運營基金이 造成되지 않은 現時點에서 운영費의 50%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金融 푸울을 解除할 경우 모처럼 이룩한 國內唯一의 防災機關에 대한 現狀유지가 困難함은勿論, 날로 变천하는 새로운 危險要素에 對處하고 國內實情에 알맞는 防災對策樹立을 위한 防災試驗所設立·運營等 防災活動의 發展的 擴大를 期할 수 없다.

4. 結論

以上 保險 푸울制度, 특히 金融 푸울保險이 우리나라 保險產業發展과 더불어 어떻게 오늘에 이

르렀는가 하는 點에 대하여 概括的으로 살펴보았다. 原來 保險은 장래의 不確實한 經濟的 損失을 事前에 對備하는 經濟制度이기 때문에 保險自體의 獨自의 成長이 있을 수 없고 經濟發展으로 因한 國民所得增加는 勿論 政治, 社會, 文化의 全般的成長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點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成長은 70年代부터 始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損害保險業界는 70年代以後 年平均 40%以上的 量的 成長을 이루하였고 質的 水準도 많이 向上 되고는 있지만 先進外國에 比하여 아직도 解決하여야 할 많은 問題點이 있는 바 즉 保險者의 保險에 對한 次元높은 認識度, 先進外國에 比하여 极히 저조한 家計保險市場의 잠재적需要에 대한 開拓, 既存料率, 各種特約再保險制度의 自律化유도, 保險代理店 育成을 위한 手數料, 稅制上의 問題點 解決, 外國保險會社와 競爭할 수 있는 擔保力증강, 보험고객에 좀 더 完全하고 最大限의 サービス를 前提로 한 善意의 競争의 要因을 保險產業에 投入할 수 있는 自律化등이 이루워질 수 있고 特히 모처럼 이룩해놓은 國내유일의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發展的으로 이를 成長시킬 수 있는 財源造成問題을 考慮할 때 金融 푸울을 解除措置는 時期的으로 이론감이 있다고 思料되어 現在의 實情으로 最小限 工場物件만이라도 그 解除措置를 保留 内지는 解除時期를 지연하는 點을 再考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설마 속에 화재 있고

조심 속에 화재 없다